

과태료부과 기준표(제102조제1항 관련)

해당법조문	위반행위의 내용 등	위반기간	과태료기준액
1. 법 제100조제1항 제1호	법 제19조(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	3월 미만	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
		3월 이상 6월 미만	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
		6월 이상 12월 미만	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
		1년 이상	6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
2. 법 제100조제1항 제2호	법 제19조의4(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)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	3월 미만	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
		3월 이상 6월 미만	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
		6월 이상 12월 미만	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
		1년 이상	6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
3. 법 제100조제1항 제3호	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		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
4. 법 제100조제2항	법 제35조(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), 법 제37조(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), 법 제79조(허가신청 등의 의무자) 또는 법 제81조(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동향조사)제2항을 위반한 자		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
5. 법 제100조제3항 제1호	법 제33조(외국인등록증의 발급) 제2항을 위반한 자	3월 미만	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
		3월 이상 6월 미만	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
		6월 이상 12월 미만	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
		1년 이상	4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
6. 법 제100조제3항 제2호	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자		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